|  |  |  |
| --- | --- | --- |
| **하이테크기업의 경외소득 적용세율**  **및 조세 상계면제 문제에 관한 통지**  재세[2011]47호  각 성, 자치구, 직할시, 중점개발도시 재정청(국), 국가세무국, 지방세무국, 신강생산건설병단 재무국 :  《중화인민공화국 기업소득세법》 및 그 실시조례, 《재정부, 국가세무총국 기업의 경외 소득 상계면제 관련 문제에 관한 통지》(재세[2009]125호)의 관련규정에 의거하여, 현재 하이테크기업의 경외소득 적용세율 및 상계면제 관련문제에 대해 아래와 같이 보충한다.  1. 경내, 경외의 전체 생산경영활동과 관련된 연구개발 비용의 총액, 총수입, 판매수입 총액, 하이테크 제품(서비스) 수입 등의 지표 신청 및 인증을 거친 모든 하이테크 기업은 그 경외소득에 대해 하이테크기업 소득세 우대정책을 적용할 수 있다. 그 경외소득은 15%의 우대세율에 따라 기업소득세를 납부하며, 경외의 상제면제 제한금액을 계산할 경우에는 15%의 우대세율에 따라 경내외의 납세총액을 계산한다.  2. 상술한 하이테크기업의 경외소득 상계면제 기타 사항은 재세[2009]125호 문건의 유관규정에 따라 집행한다.  3. 본 통지에서 말하는 하이테크기업이란 《중화인민공화국 기업소득세법》및 그 실시 조례 규정에 의거하여 인증기구에서 《하이테크기업 인증 관리방법》(국과발화[2008]172호)과 《하이테크기업 인증 관리작업 가이드라인》 국과발화[2008]362호)에 따른 인증을 거쳐 하이테크 기업증서를 취득하고 현재 15%의 기업소득세 우대세율을 적용하고 있는 기업을 뜻한다.  4. 본 통지는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재정부, 국가세무총국  2011년 5월 31일 |  | **关于高新技术企业境外所得适用税率及税收抵免问题的通知**  财税[2011]47号  各省、自治区、直辖市、计划单列市财政厅（局）、国家税务局、地方税务局，新疆生产建设兵团财务局：  　　根据《中华人民共和国企业所得税法》及其实施条例，以及《财政部 国家税务总局关于企业境外所得税收抵免有关问题的通知》（财税[2009]125号）的有关规定，现就高新技术企业境外所得适用税率及税收抵免有关问题补充明确如下：  　　一、以境内、境外全部生产经营活动有关的研究开发费用总额、总收入、销售收入总额、高新技术产品（服务）收入等指标申请并经认定的高新技术企业，其来源于境外的所得可以享受高新技术企业所得税优惠政策，即对其来源于境外所得可以按照15%的优惠税率缴纳企业所得税，在计算境外抵免限额时，可按照15%的优惠税率计算境内外应纳税总额。  　　二、上述高新技术企业境外所得税收抵免的其他事项，仍按照财税[2009]125号文件的有关规定执行。  　　三、本通知所称高新技术企业，是指依照《中华人民共和国企业所得税法》及其实施条例规定，经认定机构按照《高新技术企业认定管理办法》（国科发火[2008]172号）和《高新技术企业认定管理工作指引》（国科发火[2008]362号）认定取得高新技术企业证书并正在享受企业所得税15%税率优惠的企业。  　　四、本通知自2010年1月1日起执行。  　　　　　　　　　　　　　　　　　　　　　　　 财政部、国家税务总局　　　　　　 二○一一年五月三十一日 |